

직원 채용공고

「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 설립된 경상북도 김천의료원에서는 투철한 소명 의식과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.

2022년 8월 5일

경상북도 김천의료원장

I 응시자격

가. 선발 예정 인원

직 위	임용 직종	인원	응시자격	근무기간
간호사 육아휴직 대체인력	간호직 계약직	5명	[필수조건] •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	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
* 합격 배수 : 선발 예정 인원의 2배수				

나. 응시자격

- 1)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및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취업규칙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
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 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,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 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 6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- 7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8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
 - 8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8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*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8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
- 9.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
- 10. 본원과의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

- 2) 응시연령 : 만 18세 이상
- 3) 성별 및 지역 : 제한 없음

다. 담당업무

직 위	담당업무	비 고
간호사	• 간호사 업무 등	

라. 보수 및 근로조건

보 수	근로조건	비 고
의료원 보수규정에 따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일근) 8:30~17:30 (월~금요일) • 3교대) 근무표에 따름 	

II

채용 방법

가. 1차 서류전형

나. 2차 면접전형

다. 3차 채용 신체검사(공무원 신체검사 판정 기준)

* 채용 신체검사는 지정병원(김천의료원)에서 받을 경우 의료원에서 부담합니다.

III

채용 일정

가. 접수기간 : '22. 8. 5.(금) ~ '22. 8. 19.(금)

※ 등기우편 제출 시 접수 기간 내 등기소인일까지 인정

1) 접수방법 : 우편 및 방문 접수

2) 접수처 : 경상북도 김천시 모암길 24 총무부 (우 : 39579)

나. 시험 일정

1) 서류전형 : 개별 통보

2) 면접전형 : 김천의료원 홈페이지 공고

3) 최종 합격자 발표 : 개별 통보

IV

제출서류

가.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(본원 소정 양식)

나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본원 소정 양식)

다.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

라.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

마. 취업지원 대상자 및 보훈 대상자, 장애인 증빙서류

V

기타 사항

- 가.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나. 응시원서접수 결과 응시자가 채용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초과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다.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.
- 라. 최종 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마. 취업지원 대상자 및 의사상자, 장애인은 관련 법률에 따라 면접전형에 가산점이 있으며,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됩니다.
- * 취업 지원 대상자 : 만점의 10% 또는 5%
 - * 의사상자 : 만점의 5% 또는 3%
- 바. 응시자의 부정 합격 확인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.
- 사. 응시원서는 반드시 타이핑으로 하되, 임의로 응시원서의 양식을 변경하는 것은 금지합니다. (수기 작성 금지)
- 아. 본원에 제출한 서류는 「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, 최종 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제출한 서류를 반환할 수 있으며,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자. 기타 사항은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인사담당 (☎054-429-8172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